

윤리 규범 매뉴얼

(Ethic Standard Manual)

(주)지엠테스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1길 19
TEL : 041-410-2600 / FAX : 041-410-2699



목 차

윤리강령

제1장 총 칙

- 1.1 목적
- 1.2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 1.3 적용대상

제2장 구성원의 자세

- 2.1 성실한 업무 수행
- 2.2 이해상충의 해결
- 2.3 회사자산 및 정보의 보호와 적절한 사용
- 2.4 선물·접대 등의 수수
- 2.5 구성원간의 상호존중

제3장 법규 및 회사경영 방침의 준수

- 3.1 경영방침의 준수와 고객정보의 보호
- 3.2 경영정보의 작성과 공개
- 3.3 공정한 거래와 경쟁
- 3.4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방침

제4장 실천지침의 운영

- 4.1 책임
- 4.2 위반 행위의 보고 및 제보자 보호

윤리강령

(주)지엠테스트는 임직원 각자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 강령을 선포 한다.

-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가치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신뢰를 받도록 한다.
- (주)지엠테스트는 고객, 회사 그리고 협력회사와이 상호 동반자적인 성공을 위하여 윤리규범과 법규등을 준수함으로써, 회사에 손실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으며 협력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한다.
- 협력사로부터 일체의 금품, 선물, 향응, 사례, 편의를 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 불건전한 사생활 및 성희롱 등과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청렴, 검소한 생활을 하여야 한다.
-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비밀 및 고객과 협력사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나 타업종 종사 등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성별, 출산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으며 상호존중과 자기계발로 보람된 직장이 되도록 한다.

제 1 장 총 칙

1.1 목 적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 (이하 '실천지침')은 (주)지엠테스의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2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규범과 본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단, 실천지침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의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경영지원팀)의 자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합법성 :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 투명성 :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
- 합리성 : 다른 구성원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

1.3 적용대상

본 실천지침은 (주)지엠테스트에 재직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구성원의 자세

2.1 성실한 업무수행

구성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이해상충(利害相衝)의 해결

- 1)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의 이해상충으로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

2) 유의하여야 할 이해상충 행위는 다음과 같다. 단, 이는 모든 이해상충의 경우를 열거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구성원들의 엄격한 판단과 적용이 요구된다.

-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

-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정보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 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회사 등에 대해 인사청탁, 각종 편의 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성실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정도의 노력이 소모되는 부업활동 등

- **조직의 리더에게 이해상충 내용을 공개하고, 전결규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경우**

-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업무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

2.3 회사자산 및 정보의 보호와 적절한 사용

구성원은 회사의 유·무형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1) 회사의 자산을 승인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회사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3) PC, 인터넷, 전자메일, 전화/팩스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회사의 특허권, 영업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자산가치가 존재하는 정보 등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타인 또는 타사의 지적재산권도 동일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5) 사업정보 및 기술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자산의 공개여부 및 범위는 관련 법규 및 사규, 회사방침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외부 언론과의 인터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4 선물·접대 등의 수수

- 1) 구성원은 모든 경영활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구성원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 향응 또는 기타 개인적인 편의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3) 단,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지침은 조직 단위로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5 구성원간의 상호존중

- 1) 구성원은 동료 및 상하간에 서로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와 아이텍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 2) 성별, 학력,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 3)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의 준수

구성원은 회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법률 및 회사 방침과 사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1 경영방침의 준수와 고객정보의 보호

- 1) 품질,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테스트 서

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경영 방침 및 경영시스템의 제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고객에게 테스트 개발 및 양산 능력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하지 않아야 한다.
- 3)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구성원은 관련 법규 및 회사방침, 사규에 따라 보호절차와 지침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3.2 경영 정보의 작성과 공개

- 1) 회계 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련 법규, 사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회계정보를 왜곡하거나 숨겨서는 아니 된다.
- 2) 재무 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경영정보는 관련 사실 또는 거래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 3)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영 정보의 공개는 관련 법규 및 사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3 공정한 거래와 경쟁

- 1) 공정거래 관련법규 또는 회사의 공정거래관련 윤리서약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영진을 포함한 최고경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4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방침

- 1) 안전·보건·환경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안전·보건·환경 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 2)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3)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 4 장 실천 지침의 운영

4.1 책임

- 1) 모든 구성원들은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의 표시로 윤리서약을 하여야 한다. 윤리 실천 지침이 기술된 윤리서약의 내용에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경지원팀)에 질의·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2)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 3) 윤리경영 담당 부서(경영지원팀)에서는 최소 1년에 한번 씩 (주)지엠테스트 윤리 규범을 전 사원을 대상으로 회람 교육 하도록 한다.

4.2 위반 행위의 보고 및 제보자 보호

- 1)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구성원은 이를 조직의 리더나 윤리경영 담당부서(경영지원팀)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2) 구성원은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